

의 안 번 호	제824호
의 결 연 월 일	2025. . . (제 회)

충청북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1월 10일

충청북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이동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24
----------	-----

발의연월일 : 2025년 1월 10일

발의자 : 이동우, 이상식, 김종필,
김현문, 박지현, 이상정,
박봉순

1. 제안이유

- 청소년들이 균등한 성장 기회와 건강한 삶을 보장받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충청북도 내 위기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수행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제6조, 제7조)
-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 규정함. (안 제9조)
- 위기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사업에 대해 규정함. (안 제10조)
-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위탁에 대해 규정함. (안 제12조, 제14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비용추계 : 붙임
- 협의 :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조례안예고 : 예고 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삶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심리적 외상”이란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 상해, 성폭력, 학교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였을 때 겪는 불안, 두려움, 무력감 등의 심각한 심리적 충격으로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이고 적합한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기청소년 지원에 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계획은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위기청소년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보호, 심리적 외상의 예방·치유, 교육 및 자립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2.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지원
3. 위기청소년의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 활동 등 지원
4. 가출 예방 및 보호 활동 지원
5.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
6. 위기청소년 관련 연구 및 조사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심리적 외상의 예방 및 치유)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 및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2. 심리적 외상 상담 전문인력 양성·관리 및 소진 예방 지원

3. 심리적 외상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조기개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지원 매뉴얼 제작 및 보급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긴급 대응) 도지사는 청소년 대상 폭력 및 자살 등의 긴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긴급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비용 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엄수) 공무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복지지원기관과 청소년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서 위기청소년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호의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23.>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 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3. 23.>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청소년들이 균등한 성장 기회와 건강한 삶을 보장받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내 위기청소년 지원

2. 비용 발생 요인

- 위기청소년 상담·지원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위한 청소년안전망 구축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동반자프로그램운영 지원, 청소년쉼터 및 회복지원시설 운영 지원 등을 위한 운영비 및 사업비 등

3. 관련조문

- 안 제9조(지원 사업) 및 안 제10조(심리적 외상의 예방 및 치유)
- 안 제11조(긴급 대응) 및 안 제12조(비용지원)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5년~2027년까지 5년으로 하며, '25년 추진 사업 기준으로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 비용 추계
- *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업 안내 지침'을 근거로 비용 및 지자체 분담율 추계

나. 추계 결과 : 연간 4,347,707천원, 향후 5년간 21,738,535천원 소요

- 도 청소년안전망 구축 운영
 - 530,910천원(인건비,운영비,위기청소년지원사업비) * 1개소= 530,910천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961,461천원(인건비,운영비,청소년상담지원사업) * 1개소= 961,461천원
- 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 33,014천원(전일제)×1명 = 33,014천원, - 수석동반자 컨설팅 = 3,600천원
 - 12,264천원(시간제)×2명 = 24,528천원, -정규직수당(1명) = 2,760천원
- 청소년쉼터 운영
 - 충청북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 337,854천원 × 1개소 = 337,854천원

- 시 · 군 청소년쉼터 : 388,959천원 × 6개소 ≒ 2,333,756천원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 119,824천원(청소년회복지원시설지원) × 1개소 = 119,824천원

다. 재원조달방안(도비 + 국비 + 시군비)

- 도 청소년안전망 구축 운영 (국비 50%, 도비 50%)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도비 100%)
- 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국비 50%, 도비 50%)
- 청소년쉼터 (도 쉼터: 국비 50% 도비 50% / 시군쉼터: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합 계	4,347,707	4,347,707	4,347,707	4,347,707	4,347,707	21,738,535
도 청소년안전망	530,910	530,910	530,910	530,910	530,910	1,327,27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961,461	961,461	961,461	961,461	961,461	4,807,305
동반자프로그램	63,902	63,902	63,902	63,902	63,902	319,510
청소년쉼터 운영	2,671,610	2,671,610	2,671,610	2,671,610	2,671,610	13,358,050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119,824	119,824	119,824	119,824	119,824	599,120